
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

예금채권 집행 · 가상 작성례

채권자	[가상] 김가온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00
채무자	[가상] 이도윤 서울특별시 ○○구 △△로 00
제3채무자	[가상기관] 예시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○○구 금융로 00
집행권원	○○지방법원 2026가단00000 대여금 판결
청구금액	금 30,000,000원
피압류채권	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금반환채권

신청취지

-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금전채권을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한다.
-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위 압류된 금전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.

신청이유

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따른 금 30,000,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. 별지 금전채권의 존재·금액과 전부 적격성을 확인하고, 제3채무자 송달 전 선행 경합이 없는 가상 사례에서 그 채권을 압류하여 지급에 갈음해 이전받고자 합니다.

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. 명령 발령만으로 현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실제 존재하는 전부채권을 제3채무자의 무자력·불이행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액면액 기준 변제간주 위험을 채권자가 질 수 있지만,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는 법정 변제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2026. 8. 12.

신청인 채권자 김가온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별지 1 · 청구채권 및 전부요건의 표시

가상 작성례의 별지

집행권원	○○지방법원 2026가단00000 대여금 판결
원금	금 30,000,000원
지연손해금	이 공개 샘플에서는 계산 오류 방지를 위해 청구하지 않음
집행비용	이 공개 샘플에서는 청구금액에 산입하지 않음
합계	금 30,000,000원

전부명령 사전확인 · 가상 설정

금전채권 적격성	존재·금액이 확인되고 전부명령 대상으로 적합함
송달 전 경합	선행 압류·가압류·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음
효력·위험 이해	확정·소급효, 기존 채권의 변제간주와 부존재 예외를 확인함
압류금지 확인	생계비계좌 등 법률상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함

첨부서류

-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1부
- 송달증명서 1부
- 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표시를 확인할 등기사항증명서 등
- 피압류 금전채권의 존재·금액·변제기를 확인할 자료
- 송달료·인지 등 접수 법원이 요구하는 납부자료

실제 신청에서는 일부변제·배당액을 공제하고,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과 다른 집행의 도달 순서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.
같은 집행권원으로 여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중복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.

별지 2 · 압류하고 전부할 금전채권의 표시

가상 작성례의 별지

채무자 이도윤이 제3채무자 예시은행 주식회사(실재하지 않는 가상기관)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30,000,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

- 예금계좌 000-0000-0000-00의 예금반환채권 (가상 계좌번호)
- 원금과 이에 붙은 이자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채권
- 생계비계좌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거나 양도할 수 없는 범위는 제외

확정·송달·경합과 변제간주

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, 확정되면 금전채권 이전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. 다만 그 송달 전에 다른 압류·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도달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.

실제 존재하는 금전채권에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집행채권은 그 액면액 범위에서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. 제3채무자의 무자력·불이행으로 나중에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은 채권자가 질 수 있습니다. 다만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제 231조 단서에 따라 변제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며, 확정만으로 현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.